

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

작성일: 2022.03.27.

작성자: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

1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(총 5명)

- 위원장 허현(20, 전산학부)
- 부위원장 윤승환(21, 전기및전자공학부)
- 위원 길현중(21, 새내기과정학부)
- 위원 박병찬(21, 전산학부)
- 위원 조호정(19, 화학과)

2. 총선거 일정

- 예비후보 등록기간 : 2월 16일(수) 00시 ~ 2월 20일(일) 18시
- 총선거위탁기간 : 2월 16일(수) 00시 ~ 2월 20일(일) 23시59분
- 선거 위탁단체 공고 : 2월 21일(월) 21시
- 예비후보 공고 : 2월 21일(월) 21시
- 선거인명부 공고 : 2월 21일(월)
- 후보등록기간 : 2월 22일(화) 00시 ~ 2월 28일(월) 23시 59분
- 후보공고 : 3월 1일(화) 23시
- 선거운동기간 : 3월 2일(수) 00시 ~ 3월 13일(일) 23시 59분
- 사전투표기간 : 3월 10일(목) 00시 ~ 3월 11일(금) 23시 59분
- 선거인명부 확정 : 3월 9일(수) 23시 59분
- 투표일 : 3월 14일(월), 3월 15일(화), 양일 8시 30분~22시 30분
- 개표일 : 3월 15일

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

- 회의 8회, 서면의결 1회 진행
- 1차 회의부터 8차 회의까지의 회의록은 별첨 참조
- 2022년 1월 29일 1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위원장단 내부 호선
 - 선거 일정 확정
 - 선거 진행 방식 논의
 - 선거권 관련 논의
 - 업무 분배
- 2022년 2월 7일 2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유권해석안 작성
 - 예산 관련 논의
 - 선거이벤트 진행 관련 논의
 - 자치기구회장(단)선거 추천인서명 관련 논의
 - 연장투표 관련 논의
- 2022년 2월 15일 3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서류 양식 점검
 - 선거실무원 관련 논의
 - 선거이벤트 예산 관련 논의
- 2022년 2월 21일 4차 회의

- 주요사항
 - 선거위탁서류 검토
- 2022년 2월 29일 5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후보등록 서류 검토
 - 선거 홍보물 관련 논의
 - 학과 특방 모니터링 관련 논의
 - 선거이벤트 상품 관련 논의
- 2022년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의결
 - [의결문안] 생명화학공학과 선거운동본부 "야생화"에 사전선거운동을 사유로 부여된 경고 1회를 취소하고, 해당 행위를 선거 진행 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주의 1회를 부과한다.
 - 찬성 3인
 - 반대 1인
 - 기권 1인
- 2022년 3월 8일 6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선거운동본부 징계 관련
 - 선거 홍보물 설치 관련 논의
- 2022년 3월 14일 7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학과 특방 모니터링 사항 보고
 - 선거홍보물 설치 관련
- 2022년 3월 16일 8차 회의
 - 주요사항
 - 당선공고
 - 이벤트 당첨자 선정

4. 선거 결과 및 선거운동본부 징계 현황

-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
 - 선거운동본부 <임채원 정후보 선거운동본부> (정후보: 임채원)
 - 징계상황
 - 3월 1일 후보등록 무효 (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아니함)
 - 후보의 재학기간과 징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음 (재학증명서에는 재학학기 및 징계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)
 - 후보의 재학학기가 5학기차임에도 불구하고 4학기로 기입함
-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
 - 선거운동본부 <야생화> (정후보: 홍유승, 부후보: 이석주)
 - 징계상황
 - 3월 1일 경고 1회 (미비한 후보자등록서류를 16시간 이내 완비)
 - 정후보와 부후보의 재학기간과 징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음
 - 정후보와 부후보의 재학학기가 5학기차임에도 불구하고 4학기로 기입함
 - 3월 1일 경고 1회 (사전선거운동)
 - 생명화학공학과 선거위탁신청서의 선거담당자의 직책이 “생명화학공학과 선거운동본부장”이며, 해당 담당자를 실제 선거운동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정황이 발견됨
 - 3월 2일 경고 1회 취소 (사전선거운동), 주의 1회 (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)
 - 이의제기의 요지
 - 선거시행세칙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

- 재학생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제105조제4항
 - 학부·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·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, 자치규칙에 따른 추가적인 선거권 부여는 인정하지 않는다.
-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사항
 - 2021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기간에 의결된 유권해석사항을 따름